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2 년 6 월

• 예규·판례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 2022 서 1783, 2022.06.29)

▣ 처분의 경위

- 000 사장 등은 청구법인에게 2015.1.16.자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청구법인 주식의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가 신고 착오로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손금 000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5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함

- 000 서장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2016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여, 2021.5.10. 청구법인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5 년에서 2014 년도로 변경된 것은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2 항 4 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5.13.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 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21.6.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 결정이유(취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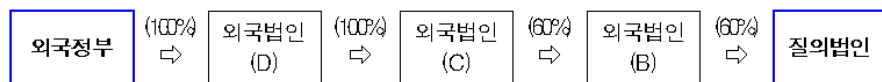
나.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05.26)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 * . 1. A 법인에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임
- A 법인은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지분 60%를 B 외국법인에 양도하였으며, 2020 사업연도말 질의법인의 지배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음



(질의요지)

- R&D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견기업 판단시 외국정부가 중견기업법 시행령 §2①(1)나목 괄호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9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되는 것임

다. 골프장용 차량 운영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7 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66159,
2022.04.15)

■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AB 으로부터 AC 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6.부터 주식회사 AD 로부터 AE 골프장의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임

•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옴

•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7 호 1)의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 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B 는 2015 년 1 기부터 2018 년 1 기까지의, 원고 주식회사 K 는 2019 년 2 기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5 년 1 기부터 2019 년 2 기까지(단, 주식회사 X 는 2016 년 1 기 제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8. 원고 H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2021. 5. 12.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 결정이유(기각)

-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7 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두 16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7 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 두 10011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용역의 특성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그 분류구조와 체계 등에 의하면, 골프장은 운영업에 해당하는 주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운송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의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사건 용역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점, ③ 골프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며,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인 해당 인원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 ④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 다시 말해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음

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5.28)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공산품 등 도소매,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 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카드결제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 회신

-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 15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